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조의2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  - 2) 입법예고: 2023. 7. ~ 2023. 8. (20일 이상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

기존	연장
2023년 12월 31일	2028년 12월 31일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